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6. 21(수) 10:00

#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41호
- 나. 제 출 자 : 도병두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19241호, 2023. 3. 21. 공포, 2023. 9. 22.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채용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임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다.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안 제4조 ~ 안 제10조 )
- 라.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안 제11조 및 제12조)
- 마.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안 제14조 ~ 안 제17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2023. 3. 21. 지방자치법 개정(2023. 9. 22.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의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정비된 조례안으로 보여짐.
-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대상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 절차·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사람”임을 정의하고 있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과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음.

또한,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인사청문회 절차·운영(안 제4조 ~ 안 제10조)

-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안 제11조 및 제12조)

-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을 행할 수 있도록 함.

○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안 제14조 ~ 안 제17조)

-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안되며,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됨을 규정함.

-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최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 검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사검증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인사청문회의 운영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47조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